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2. 22 선고 2020가단70882(본소), 2020가단73263(반소) 판결
[선박·선박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학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승찬

변 론 종 결 2020. 11. 10.

판 결 선 고 2020. 12.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을 각 인도하라.

○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에 관하여 2019.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5. 30. 원고의 부친인 C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선박(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8,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7,850만 원은 계약일에, 중도금 2억 원은 2019. 6. 15.에, 잔금 중 1억 9,000만 원은 2019. 9. 30.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액은 피고가 이 사건 각 선박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며, 피고가 위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각 선박을 관리하고, C가 선체검사, 주기개방검사를 해주며, 중도금 입금 시 법무사를 통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2019. 5. 30.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9. 5. 30.자 매매계약에 따라 C가 지정한 계좌 등으로 2019. 5. 30.에 7,600만 원을, 다음날 2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7,85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9. 7. 4.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은 2억 원, 잔금은 2019. 9. 28.까지 7억 원으로 정하는 등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위 계약을 ‘2019. 7. 4.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7. 4.자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그 지급기일인 2019. 9.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9. 7. 4.자 매매계약에서는 피고가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별도의 최고 없이 계약의 해제가 간주되는 것으로 정하였으므로, 이로써 2019. 7. 4.자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게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잔금의 지급을 수차례 걸쳐 최고하였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들어 2019. 10. 말경의 해제통보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이나 2020. 6. 1.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 대하여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러한 이유에서도 2019. 7. 4.자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9. 7. 4.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인도받았던 이 사건 각 선박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9. 7. 4.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일 2019. 9. 28.에 완불이 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선박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특약(이하 '이 사건 포기특약'이라 한다)을 포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9. 7. 4.자 매매계약 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영수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선박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근저당권과 가압류도 정리하여 준다'는 내용을 위 계약에 포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근저당권 등의 정리의무는 피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포기특약이 자동해제 약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원고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그 이행을 제공하지 않는 이상 2019. 7. 4.자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등 참고), 피고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도 할 수 없으며, 한편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오히려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러한 최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19. 7. 4.자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는바,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청구

가. 피고의 주장

2019. 7. 4.자 매매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2019. 5. 30.자 매매계약 내용을 단지 다운계약서로 작성한 것인 데다가, 2019. 7. 4.자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토요일이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권이전등록도 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2019. 5. 30.자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인 2019. 9. 30.에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C가 잔금수령을 거부하였고, 그 뒤로도 피고의 수차례의 잔금수령 및 소유권이전등록 독촉에도 불구하고 C와 원고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선박의 실제 소유자인 C가 이 사건 각 선박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인 원고는 피고와 명의신탁자인 C 사이의 2019. 5. 30.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계약상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2019. 5. 30.자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원고도 그 효력을 추인 내지 인정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019. 5. 30.자 매매계약에 따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1)

위 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5. 30. C와 사이에 2019. 5. 30.자로 이 사건 각 선박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를 살펴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자의 매매가 '민법 제569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 매매'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연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제3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를 그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다만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9. 5. 30.자 매매계약의 계약서에 원고의 도장도 날인되어 있는 점, 원고도 이 사건 소송에서 2019. 5. 30.자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 8. 10.자 준비서면) 등에 비추어, 2019. 5. 30.자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이고 C는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에 참여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2019. 5. 30.자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물취되었고 2019. 7. 4.자 매매계약은 그 계약금의 물취 사실을 상호 확인하고 다시 체결된 것이라면서, 이로써 2019. 5. 30.자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원고는 2020. 12. 21.자 참고서면에서는 '합의해제'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증인 D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가 2019. 5. 30.자 매매계약에 정한 중도금 지급날짜에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2019. 7. 4.자 매매계약의 계약서는 C가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고 피고도 이에 동의하여 작성된 것인 점, 2019. 7. 4.자 매매계약 당시 함께 있었던 D도 위 계약에 관하여 '예전 것을 없던 것으로 하고 새로 쓰자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9. 7. 4.자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소지하고 있던 2019. 5. 30.자 매매계약의 계약서를 찢어 없앴 점, 2019. 7. 4.자 매매계약의 계약서에는 기존 계약서의 주요 약정내용이 일부 변경되었거나 새로운 약정내용이 추가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2019. 7. 4.자 매매계약을 새로이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2019. 7. 4.자 매매계약만을 유효하게 존속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9. 5. 30.자 매매계약에 기하여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수 없는바, 2019. 5. 3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별지

순 번	종류	어선번호	어선 명칭	기관종류 총톤수	마력 선질	길이 (m)	깊이 (m)	너 비 (m)
1	본선			선박용디젤 9.77	720 FRP	15.2	0.97	4.25
2	동선			선박용디젤 9.77	536 FRP	14.7	1.02	4.08
3	운반선			선박용디젤 9.77	500 FRP	13.9	1.21	3.85

1) 원고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변론종결 이후(2020. 12. 21.자 참고서면)에 제기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따로 살펴보지 아니한다.